

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국외 원자력시설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환경의 방사능오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오염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, 이를 원자력안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05조의3 신설 및 제105조·제111조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의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혜 진)